

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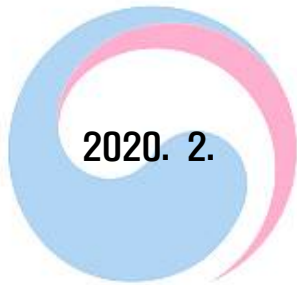
2020년도 「디자인 조사·분석 등 용역 사업」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

제1조(정보누출 등 금지행위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별표 1-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
 2. 별표 1-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
- ② 조사원은 계약기간 동안 특허, 실용신안등록, 상표등록, 디자인등록 출원을 할 수 없고,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.

제2조(벌칙) ①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대리인·지배인,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-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적용한다.

② “특허청”은 제1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, “계약상대자”에 부과된 벌점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다음년도 계약물량 및 조사물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.



상표디자인심사국
디자인심사정책과

【별표 1-1】

누출금지 대상정보

보호등급	대상정보
<p><가 등급> 특허청이 정한 비공개 정보</p>	<p>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</p> <p>②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</p> <p>③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</p> <p>④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명시된 정보</p>
<p><나 등급> 특허청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</p>	<p>① 정보시스템의 내·외부 IP주소 정보</p> <p>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-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-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- 침입차단시스템·방지시스템(IPS)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- 라우터·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</p> <p>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물</p> <p>④ 사용자계정·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</p>
<p><다 등급> 용역결과물 및 특허청 문서</p>	<p>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중간 및 최종산출물</p> <p>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특허청 내부 문서</p>

【별표 1-2】

보안위반 처리기준

구분	금 지 행 위	별 칙
<p>심 각 위 반</p>	<p>1. 특허청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. 미공개 출원정보 및 개인정보 나. 특허청 『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』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* 비공개 정보 : 「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」 별표2에 해당하는 정보</p> <p>2.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. 특허넷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.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구조,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.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</p>	<p>• 전문기관 지정취소</p>
<p>중 대 위 반</p>	<p>1.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'가'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.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.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.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.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</p> <p>2. 부적절한 방법으로 특허청 시스템 접속 또는 조작 가.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 나. 승인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</p> <p>3. 제한구역 보안관리 소홀 가.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나. 출입문 열쇠 방치 다. 출입문 열쇠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 라. 승인받지 않은 작업자의 출입 * 제한구역 : 특허청 전산센터 및 특허청이 지정한 제한구역</p>	<p>• 업무정지 6월 및 6개월에 해당하는 계약물량 감소</p> <p>• 6개월 후 보안점검 실시하여 동일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지정취소</p>

구분	금지행위	별치
보통 위반	<p>1.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'나'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.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.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.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.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</p> <p>2. 특허청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안규정 위반 가. PC 봉인지 임의훼손 또는 보안USB 프로그램 임의해제 나. PC CMOS · 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다. 전산장비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 노출</p> <p>3. 인원 보안관리 위반 가.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업 투입인력 교체 나. 출입증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불이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업무정지 3월 및 3개월분 계약물량 감소 ▪ 3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업무정지6월 및 6개월분 물량 추가감소 ▪ 6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지정취소

구분	금지행위	별치
경미 위반	<p>1.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'다'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.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.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.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.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</p> <p>2.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.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나. 출입문 열쇠 방치 다. 출입문 열쇠의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 라. 일일 보안점검일지 관리 소홀(미구비 또는 미작성)</p> <p>3. 전산장비 보안관리 미흡 가. 보안 소프트웨어(백신, 내PC 지키미 등) 주기적 점검 미 실시 나.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· 프로그램(웹하드, P2P 등)과 메신저 · 대화방 프로그램 사용 다. PC CMOS · 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.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.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 · 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패치 미 실시 바.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 · 사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고 ▪ 1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업무정지3월 및 3개월분 계약물량 감소 ▪ 3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업무정지6월 및 6개월분 물량 추가감소 ▪ 6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지정취소

※ 특허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3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표6 근거

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『별표 1』

[시행 2019. 5. 10.] [특허청훈령 제936호, 2019. 5. 10. 일부개정]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(제9조 제1항 각호 관련)

작성단위(국/과)	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	근거 조항
특허심사 기획국, 특허심사 ~3국	특허, 실용신 안 심사부 서	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	·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(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)에 관한 서류 ·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216조 제2항, 실용신안법 제44조
			· 국방상 필요한 특허·실용신안 서류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41조 제4항,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
상표 디자인 심사국	디자인 심사부 서	디자인·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	·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,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 서류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
산업재산 정책국	산업재 산인력 과	변리사자격·정 계위원회 운영	· 변리사자격·정계위원회 회의록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
		변리사 등록 및 자격 관리	· 변리사 등록 시 개인 이력사항·주민등록번호·정계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
	산업재 산창출 전략팀	배치설계심의조 정위원회 운영	·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회의록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
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		· 반도체 배치설계 파일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	
산업재산 보호 협력국	산업재 산보호 정책과	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	·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
	산업재 산조사 과	상표·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	· 위조상품 단속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단속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· 부정경쟁행위 전문가 자문회의록 및 조사 결과 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, 제6호 및 제7호

		상표권 침해 단속	고 등 내부 보고 · 사건 당사자 외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자료	
산업재산 보호 협력국, 정보고객 지원국	국제협 력과, 다자기 구팀, 정보고 객정책 과	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 및 협력,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,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	·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, 외국과의 양자간·다 자간 통상협정,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등과 관련된 외교문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
정보고객 지원국	정보고 객정책 과, 정보시 스템과	산업재산권 정보화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·유지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, 분석 및 평가, 기반 기술 및 규격의 검토	·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 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·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 는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2호
직할	감사당 당관	공직자 재산 등록	· 공직자 재산 상황	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1호 및 공직 자윤리법 제10조 제3~4항
		사정 및 공직 기강 관련 업무	· 직무 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, 시기 등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5호
		감사	·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 사항 중 개인식별형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
직할	심사품 질담당 관	특허출원과 실용 신안·디자인·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품질에 관한평가	· 심사관 심사평가 결과	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5호
직할	운영지	인사(채용) 관리	·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	정보공개법 제9조

원과			관리,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신청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	제1항 제5호
	인사 관리		· 인사교류 신청, 채용 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
			· 징계위원회 회의록	
	개인별 인사기록 관리		·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, 학력, 주민등록번호, 병력사항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
	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사무		·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위한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
	보안업무 및 보안감사		·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
			· 비밀 및 대외비 문건,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,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	
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		·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	
기획 조정관	혁신행정담당관	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 관련 정보	· 정부조직 개편,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, 협의, 결정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
	규제개혁법무담당관	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수행	· 진행 중인 심판 및 소송 관련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
		성과평가	· 직원 성과평가 결과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
전 부서	통계 관련 업무	·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통계법 제33조	
전 부서	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	·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	
전 부서	민원 업무	·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 회신문서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)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	

전 부서	경영, 영업상 비밀정보 포함 업무	· 경영, 영업상 비밀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
특허심판원	심판	·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216조 제2항, 실용신안법 제44조
		· 심판 합의체의 합의내용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법 제146조 제3항, 실용신안법 제33조
	송부	·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결정계 심결 취소소송에서의 상호 제출서류 및 증거목록 등 관련 정보	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